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정이유

-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의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안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,
- 또한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을 대비하기 위하여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위촉기간 2년의 고문변호사를 2인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함. (안 제2조)
-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. (안 제3조)
-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정함. (안 제5조)
-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에 참석하는 경우출석수당을 지급함. (안 제6조)
- 사건 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□ 제 정 안 : 불임과 같음

□ 참고사항

- 관계규정 : 해 당 없 음
- 예산조치사항 :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.

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.

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자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행정심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3. 각종 의안 심의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
4.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

제4조(소송대리인 선임) 의장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해촉)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무를 고의로 기피한 때
2.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
3.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

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는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7조(사건처리부)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사 건 처 리 부

구분 종류	사 건 명	의 회 년월일	의 회 내 용	회 신 년월일	회 신 내 용	비고
소송사건						
이의신청						
행정심판						
의안심사						
법령해석						
기 타						